영등포구의회
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2014. 4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

1. 경　　과

의안 제287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목적이 중복되는 융자사업이 존재하고 특히, 이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이후는 신청자의 담보 제공 곤란으로 대부 신청률이 저조하게 됨으로써 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져 기금 운영·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」를 폐지함.

나. 종전 기금,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되 종전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는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함.

4. 검토의견

❍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96. 7. 8 제정된 조례로서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개인신용, 담보문제로 대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금활용의 실효성이 낮아 구의회 세입·세출 결산검사 시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한 바 있어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❍ 본 조례를 폐지하여 특별회계(예산액 27억 1,900만원)를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,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해 온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융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 시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, 운영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 향후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